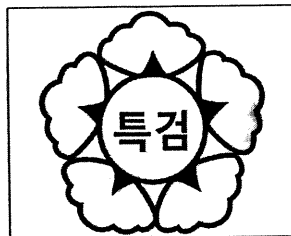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2017. 3. 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목 차

- 第 1 章 특별검사 일반 현황1
 - I. 특별검사 출범 경위 2
 - II. 수사팀 편성 현황 4
 - III. 특별검사 시설 및 장비 5
 - IV.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8
 - V. 수사 진행 경과 10
 - VI. 주요 사건 수사 내역 13

- 第 2 章 주요 사건 수사 결과16
 - I.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17
 - II.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25
 - III.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30
 - IV.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38
 - V.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53
 - VI.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55
 - VII.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65

- 第 3 章 의혹사항 조사 결과69
 - I.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70
 - II.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74

- 第 4 章 검찰 이관 사건81
 - I.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82
 - II.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85
 - III.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89
 - IV.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93

- 第 5 章 제도개선 사항 95

第 1 章

특별검사 일반 현황

- I. 특별검사 출범 경위
- II. 수사팀 편성 현황
- III. 특별검사 시설 및 장비
- IV.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 V. 수사 진행 경과
- VI. 주요 사건 수사 내역

I. 특별검사 출범 경위

1. 특별검사법 제정 이유 및 경과

가. 제정 이유

- 민간인 최순실¹⁾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국가시스템을 혼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또한, 최순실 등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 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임
-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1) 최순실은 2014. 2.경 '최서원'으로 개명하였으나, 본 보고서에는 특검법 범명에 기재된 이름인 '최순실'로 표기

나. 제정 경과

- 2016. 11. 15. 법률안 제안(우상호 등 209인)(의안2003604호)
- 2016. 11. 16.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16. 11. 17.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 2016. 11. 17. 본회의 상정(제346회 제13차)
- 2016. 11. 17. 본회의 의결 및 원안가결
- 2016. 11. 18. 정부이송
- 2016. 11. 22. 공포(공포번호14276)

II. 수사팀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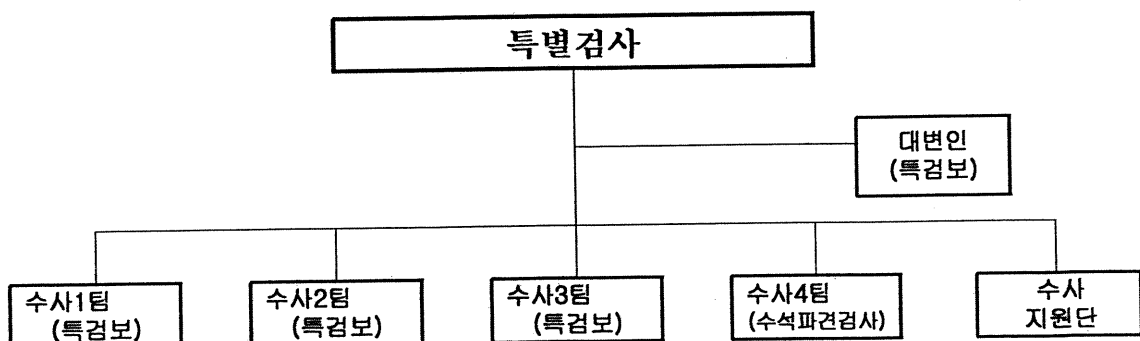
1. 특별검사 임명

- 2016. 12. 1. 특별검사 임명(대통령, 국회에서 2명 추천)

2. 인적구성(총 122명)

- 2016. 12. 5. 특별검사보 4명 임명(대통령, 특별검사가 8명 추천)
- 2016. 12. 6. 제1차 파견검사 10명 발령(대통령)
- 2016. 12. 12. 제2차 파견검사 10명 발령(대통령)
- 특별수사관 31명 채용(변호사 26명, 세무사 1명, 의사 1명 등)
- 파견공무원 40명(검찰수사관 32명, 경찰 2명, 국세청 2명, 금감원 2명, 서울시청 1명, 출입국관리소 1명)
- 행정지원요원 26명(통번역관 1명 포함)

특별검사 조직도



Ⅲ. 특별검사 시설 및 장비

① 특별검사 시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17~19층 771평에 특별검사 사무실 설치(2016. 12. 12. 입주)

※ 조사실 10실(영상녹화조사실 4실)

- 출입 보안시설, 주요지점 CCTV 설치

②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과학수사 장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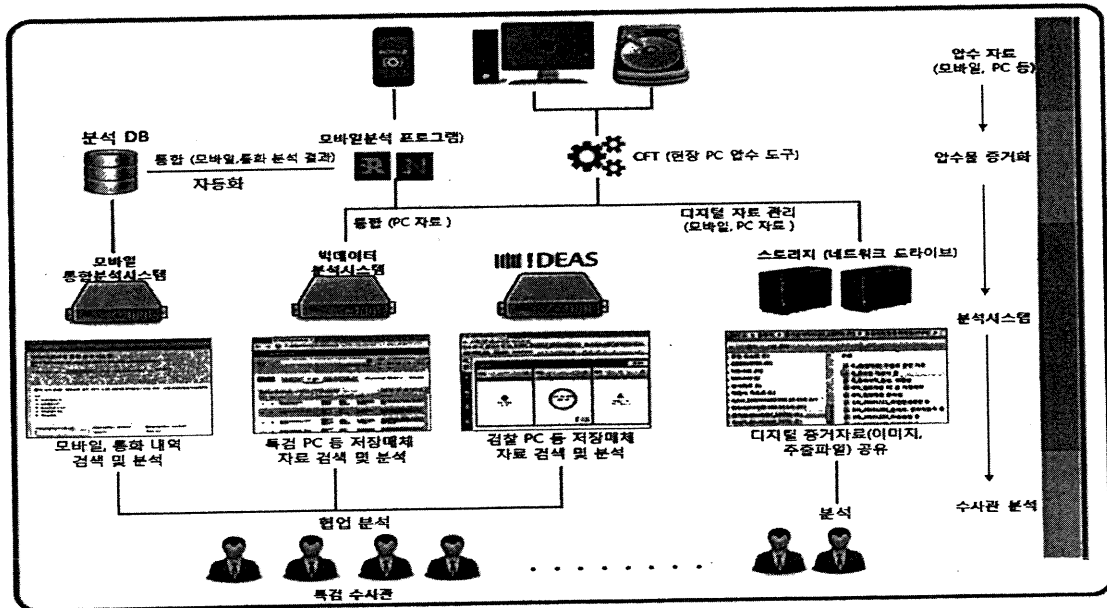
- 나스 서버(대용량 디지털 증거 저장 및 네트워크 운영 장치) 1식, 누익스 애플리뷰 서버(대용량 디지털 증거 색인 및 포털 검색 시스템) 1식, 파이어아이(네트워크 보안장비) 1식,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1식, 모바일 분석 서버 1식 등 과학수사 장비 구축

2. 특검의 디지털 압수 자료 현황

구분	수량	크기(TB)	
		증거 이미지	증거 추출 파일
PC 등 저장매체	549	10(TB)	5.3(TB)
모바일	351	6(TB)	3.8(TB)
총계	900	16(TB)	9.1(TB)

※ 임의제출 자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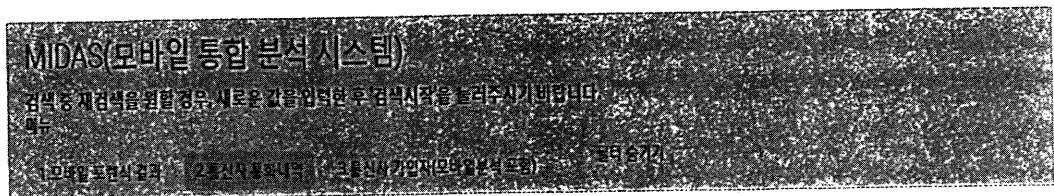
3. 디지털자료 분석 시스템(분석시스템 개요도)



4. 디지털 분석 시스템 내용

가. MIDAS(모바일 통합 분석 시스템) : 자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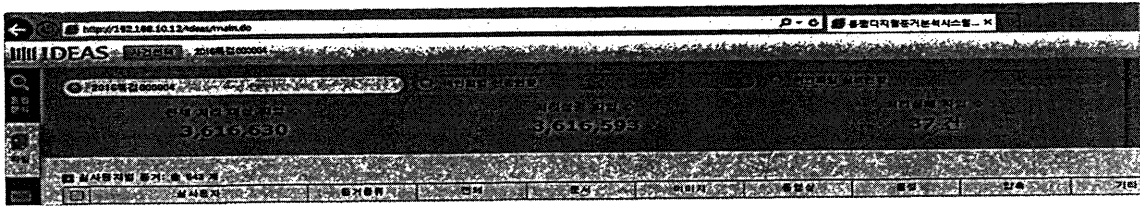
- Mobile Integrated Data Analysis System의 약자로, 방대한 모바일 관련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구축한 웹기반 검색 시스템
- 모바일기기에서 산출한 약 4,700만건의 분석 정보, 통신사실조회요청 자료 약 220만건, 메신저 송·수신 내역 약 3천 6백만건 검색 제공
- 수사기간 중 하루 평균 3천회 MIDAS 자료 조회



나. 빅데이터 분석 및 검찰 IDEAS 시스템

- PC, 이메일, 전자결제, 통화, 계좌 등 디지털증거를 사건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다운로드 등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방대한 양의 압수자료 분석을 위해 'E-Discovery'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검찰 자체 개발 분석 툴인 IDEAS 시스템 구축
- 한글(HWP) 파일을 포함한 각종 오피스 파일과 다양한 형태의 이메일 파일을 분석하여 신속히 '검색 가능한 상태(Indexing, 인덱싱)'로 구성
- 'Web Reviewer' 모듈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공동조사 기능 지원



IV.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특별검사법 제2조 각호로 15개 사항의 수사 대상 특징】

- 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이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 ② 최순실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 의혹사건
- ③ 최순실 등과 안종범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 ④ 최순실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 ⑤ 최순실 등이 자신들의 법인·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 등의 이권 개입,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 ⑥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학사관리 등에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 ⑦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 ⑧ 제5호~제7호의 사건과 관련, 안종범, 김상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김종, 송성각 등이 최순실 등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 ㉑ 제1호~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 우병우가 청와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 ㉒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의 내사 과정에서 우병우가 영향력을 행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 ㉓ 최순실 등과 안종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 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 ㉕ 최순실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 ㉖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 ㉗ 제1호~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V. 수사 진행 경과

① 수사 기간

○ 2016. 12. 21. ~ 2017. 2. 28.(70일)

※ 준비기간 2016. 12. 1. ~ 12. 20.(20일)

② 수사준비기간 중 자료 검토

○ 특별검사보 임명 및 파견검사 발령 직후 정식 특별검사 사무실 설치 전부터 최소한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작성의 수사기록(약 55,000쪽) 사본을 인계받아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등 향후 수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음

③ 주요 수사 활동 사항

- 압수수색 46회
- 포렌식 분석 8.5TB(컴퓨터 및 저장매체 554대, 모바일기기 364대)
- 계좌 확인 및 추적 5건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 22건

④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 압수수색
- 2016. 12. 2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거지 등 3개소 압수수색
- 2016. 12. 26. 문화체육관광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
거지 등 15개소 압수수색

- 2016. 12. 27. 정유라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2016. 12. 29. 이화여대, 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 2016. 12. 3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 2017.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 2017. 1. 3.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구속
- 2017. 1. 5. 최순실 사용의 '제2의 태블릿PC' 압수조치
- 2017. 1. 10.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구속
- 2017. 1. 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김종덕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구속
- 2017. 1. 16.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기소
- 2017. 1. 18.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 구속
- 2017. 1. 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류철균 전 이화
여대 교수 구속기소
- 2017. 1. 2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 구속
- 2017. 1. 25.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 2017. 1. 29.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구속기소
- 2017. 1. 30.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기소
-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 2017. 2. 3. 박채운 와이제이콥스 대표 구속
- 2017. 2. 6.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구속기소
- 2017. 2. 7.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불구속기소
- 2017. 2. 8.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 구속기소
- 2017. 2. 9.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 2017. 2. 15.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
-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1개월) 승인 요청(대통령 권한대행)
- 2017. 2.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2. 1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 2017. 2. 22. 박채운 구속기소,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2017. 2. 27.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결정 통지(대통령
비서실장),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 2017. 2. 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
기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외 16명 불구속기소

VI. 주요 사건 수사 내역

순번	사건번호 (중앙지검)	피고인	죄명	기소일자	비고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1	2016-5 (중앙17-8388)	문형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1. 16.	구속
2	2017-5,15,17 (중앙17- 19020,19023)	1이재용 2박상진 3최지성 4장총기 5황성수	1.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5.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2. 28.	1구속 2불구속 (판사 기각) 3불구속 4불구속 5불구속

3	2016-1 2017-11,12,22 (중앙17- 15651,19021, 19022,19026)	최순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	2017. 2. 28.	불구속
4	2016-2 (중앙17-19019)	홍완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2017. 2. 28.	불구속
5	2017-16,18 (중앙17- 19024,19030)	이영선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 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7. 2. 28	불구속 (판사 기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6	2016-3, 2017-3,8 (중앙17- 11436,11437, 11438)	1김종덕 2신동철 3정관주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위반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위반	2017. 1. 30.	각 구속
		4김기춘 5조윤선 6김상률 7김소영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위반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위반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2. 7.	4구속 5구속 6불구속 (판사 기각) 7불구속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7	2016-6, 2017-23 (중앙17- 7528, 19032)	유철균	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한법률위반	가. 2017. 1. 19. 나. 2017. 2. 28.	가. 구속 나. 불구속 (추가 기소)
---	--	-----	--	------------------------------------	-------------------------------

8	2017-1 (중앙17-9828)	남궁곤	가.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7. 1. 29. 나. 2017. 2. 28.	가. 구속 나. 불구속 (추가 기소)
9	2017-2 (중앙17-12224)	김경숙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2. 6.	구속
10	2017-6 (중앙17-12225)	이인성	업무방해	2017. 2. 8.	구속
11	2016-1 2017-4,7,24 (중앙17- 11692,15651, 17453,19033)	1최순실 2최경희 3이원준 4이경옥 5하정희	1. 업무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2.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업무방해 4. 업무방해 5. 업무방해	2017. 2. 28.	1불구속 2구속, 3~5 불구속
비신진료 및 특에 의혹 사건					
12	2017-10 (중앙17-13830)	박채윤	뇌물공여	2017. 2. 22.	구속
13	2017-4,10,19 (중앙17- 13830,14782, 16458)	1김영재 2김상만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의료법위반	2017. 2. 28.	각 불구속
14	2017-14 (중앙17-16387)	안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7. 2. 28.	불구속
15	2017-20 (중앙17-16516)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2. 28.	불구속
16	2017-21 (중앙17-16688)	이임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2. 28.	불구속

第 2 章

주요 사건 수사 결과

- I.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 II.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 III.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IV.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 V.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 VI.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 VII.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I.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본건은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1] 피고인

- 이재용(48세) 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 최지성(66세)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삼성전자 부회장)
- 장충기(63세)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
- 박상진(63세) 불구속,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 황성수(55세) 불구속,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 최순실(60세) 불구속(별건 구속), 임대업

2] 공소사실 요지

1. 뇌물공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

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그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실제 지급하고, 추가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공여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2015. 10. 2. ~ 2016. 3. 3.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제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20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

	승마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합계
공여 금액	77억 9,735만 원 (약속 213억 원)	16억 2,800만 원	125억 원	79억 원	298억 2,535만 원 (약속 포함 433억 2,800만 원)
		합계 220억 2,800만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대통령, 최순실에게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삼성전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사이에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자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최순실이 구입한 말, 말 운송용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전자 자금 합계 77억 9,735만 원(597만 9,686 유로) 횡령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2015. 10. 2. ~ 2016. 3. 3. 위와 같이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영재센터는 최순실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출연 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에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의 각 회계담당자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억 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해자 에스원의 자금 10억 원 등 합계 220억 2,800만 원을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횡령

	승마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합계
횡령 금액	77억 9,735만 원	16억 2,800만 원	125억 원	79억 원	298억 2,535만 원
		합계 220억 2,800만 원			
관련 피고인	피고인 전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7. 26.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가 사용할 말과 독일 체류비 등 필요한 돈을 최순실에게 주기 위하여, 사실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는 최순실이 피고인 이재용으로 부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관리하는 등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없고, 실제로는 코어스포츠를 통해 최순실에게 용역비 등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삼성전자에서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환거래법상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거나 실제로는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제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횡령한 삼성전자 자금 6,022,969 유로(한화 78억 9,430만 원)를 코어스포츠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7. 26. 대통령에게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승계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정유라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공여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제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코어스포츠로 5,979,686 유로(77억 9,735만 원 상당)를 송금하여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 2016. 11. 초순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뇌물로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5. 피고인 이재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이재용은 2016. 12. 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영재센터,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순실,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1. 압수수색 실시(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5곳)
- 2017. 1. 9. 피고인 최지성 조사

- 2017. 1. 13. 피고인 이재용 조사
- 2017. 1. 16.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2017. 1. 18.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2017. 2. 3. 압수수색 실시(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곳)
- 2017. 2. 9. 피고인 최순실 조사
- 2017. 2. 12. 피고인 장충기 조사
- 2017. 2. 13. 피고인 이재용 제2회 조사, 피고인 박상진 조사, 피고인 황성수 조사
- 2017. 2. 14. 피고인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피고인 박상진 구속영장 청구
- 2017. 2. 16. 피고인 이재용 구속(피고인 박상진 기각)
- 2017. 2. 18. 피고인 이재용 제3회 조사
- 2017. 2. 22. 피고인 이재용 제4회 조사
- 2017. 2. 28. 피고인 이재용 구속 기소,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최순실 불구속 기소

4] 참고사항

1. 삼성그룹의 경영시스템 변화

- 수사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삼성그룹은 2017. 2. 28.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산하 대관 조직 포함) 해체와 계열사별 자율경영체제 전환 발표

- 개혁안에는 그룹 전체 사장단 회의 폐지, 일정 기준 이상의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이사회(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최순실의 태블릿 PC 추가 확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또 다른 태블릿PC가 추가로 확인되었음
- 장시호는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M-T815N0)를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던 것이 명백함
 - 장시호는 2016. 10.경 최순실의 귀국 전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8-2 브라운스톤레전드 604호에 있는 최순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 하여 장시호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다가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장시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암호 패턴이 "L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태블릿PC 암호 역시 "L자" 패턴이었음
 - 위 태블릿PC에는 2015. 7. 24. ~ 2015. 11. 25. "hongmee15@gmail.com" 등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186개의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수신된 이메일 중 David Yoon이 보낸 이메일의 수신자가 "hongmee15@gmail.com, 최순실"로 표시되어 있고,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상당수 이메일들은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 및 부동산 구매 업무 등 최순실을 도와준 ○○○ 변호사, □□□, △△△ 등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임
 - 위 태블릿PC에는 2015. 10. 13.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위 말씀자료는 최순실이 사용한 'leezu2015@gmail.com' 이메일 계정에서 다운로드된 것이며, 정호성 비서관은 위 말씀자료를 최순실에게 전

달하여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위 태블릿PC의 휴대전화 번호는 “010-9328-○○○○”이고, 2017. 2. 1. 최순실이 차명폰을 개통하는데 자주 이용하였던 SK텔레콤 대리점(□□□□) 압수수색 및 위 대리점 업주 □□□ 조사 결과, 최순실이 2015. 10. 12. 직접 위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M-T815N0)를 가지고 위 대리점에 찾아와 “○○○” 명의로 위 휴대전화 번호(010-9328-○○○○)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은 최순실이 소유한 건물(미승빌딩)에서 청소를 하는 직원이었음
- 위 휴대전화 번호 “010-9328-○○○○” 사용 요금은 2015. 10. 12. ~ 2016. 10. 26. 최순실의 비서인 △△△ 명의 계좌(국민은행 303802-04-○○○○○○)에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는 위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최순실이 개통한 다수의 차명폰 요금이 함께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도 최순실의 지시로 위 차명폰 요금을 위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3. 최순실 재산에 대한 추정보전 명령 청구

-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재용 등으로부터 승마 관련 뇌물 합계 77억 9,735만 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2. 28.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범죄 수익의 귀속 주체인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토지 1/2 지분, ‘하남시 하산곡동’ 부지 및 건물 1/2 지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 및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최순실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채권 약 41억 5,900만 원, 지인 ○○○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추정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음

II.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본건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건임

1 피고인

- 문형표(61세) 구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 홍완선(61세), 불구속,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 공소사실 요지

1. 문형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대한민국 국민 약 2,100만 명의 사망, 질병 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노후자산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 시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기금 운영의 비전문가인 행정부처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에 개입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말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고용복지수석비서관 ○○○, 보건복지비서관 □□□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등에게 지시하여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2015. 7. 10.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한 후 2015. 7. 17.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6. 12. 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홍완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자문기관들로부터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반대를 권고받았고,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도 분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 국장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 ○○○에게 합병 성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되는 손실 약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으로부터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분석 자료를 보고받고, 2015. 7. 9. ○○○ 국장에게 문형표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고, 2015. 7. 10. ‘전문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스스로도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7. 10. 15:00경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찬성 결론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위원회에 배석자로 참석한 ○○○로 하여금 조작된 시너지 효과가 포함된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근거로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은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2.1조 원의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찬성투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투자위원회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완용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

별적으로 접촉하여 합병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한 합병 찬성 지시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너지 효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17.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한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1. 압수수색 실시(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5곳)
- 2016. 12. 26. 피고인 홍완선 조사
- 2016. 12. 29. 피고인 문형표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 2016. 12. 31. 피고인 문형표 구속
- 2016. 1. 5.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 조사
- 2017. 1. 16. 피고인 문형표 구속 기소
- 2017. 1. 23. 피고인 홍완선 조사
- 2017. 2. 28. 피고인 홍완선 불구속 기소

④ 참고사항

- 국민연금공단은 2,10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률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선되는 목표임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영에 따른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병비율이 매우 불공정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하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찬성 또는 반대가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주요안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외부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본건은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됨
-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 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 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함
-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임
-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일부 편파적 정파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본건은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피고인

- 김기춘(77세), 前 대통령비서실장
- 조윤선(50세),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김종덕(59세),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동철(55세),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 정관주(52세),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 김상률(56세),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김소영(50세), 前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2]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김상률, 김종덕 등의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 인사조치

- 김상률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 공모 하여, 2013. 3. ~ 2016. 5.경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을 문제삼아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자,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을 좌천시킨 다음, 이후 계속 하여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2.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관련 인사조치

-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비서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은 대통령, 최순실 등과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순차 공모 하여, 2013. 9. ~ 2016. 9.경 정무수석 주관 하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 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함과 아울러 문체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정무수석실에 보내 지원 가능한 신청 건과 지원 배제할 명단을 하달 받아 지원 배제 리스트를 계속 축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 개입함으로써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을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하여 8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함과 동시에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김기춘 비서실장,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2014. 9.경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데다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으며, 문체부 관례에 따르면이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3. 피고인 김기춘의 위증

- 2016. 12. 7.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4. 피고인 조윤선의 위증

- 2016. 9. 27.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 2016. 11. 30.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5. 피고인 김종덕의 위증

- 2016. 12. 15.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고,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해임 경위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

6. 피고인 정관주의 위증

- 2016. 10. 13.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 2016. 11. 30.경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1차)'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15. ○○○ 前 문체부장관 조사
- 2016. 12. 22.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 최순실 각 범죄인지
- 2016. 12. 26. 문체부,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017. 1. 2. ○○○ 前 비서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017. 1. 4. 국회 국조특위,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고발 (위증)
- 2017. 1. 9.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각 범죄인지
- 2017. 1. 9.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11.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영장 발부
- 2017. 1. 12. ○○○ 前 정무수석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 2017. 1. 13. 피고인 김기춘 자녀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17. 국회 교문위, 조윤선, 정관주 고발 (위증)
- 국회 국조특위, 김기춘 고발 (위증)
- 2017. 1. 18. 피고인 조윤선 범죄인지
- 2017. 1. 18.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20.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 2017. 1. 30.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기소
- 2017. 1. 31. 피고인 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 2017. 2. 3.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 2017. 2. 7.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구속기소
-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 불구속기소
- 2017. 2. 28. 대통령 범죄인지

4] 참고사항

1. 본건의 특징

- 각 정권마다 그 보수, 진보적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산 운용은 입법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 단순히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로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순수문예지로서 이념적으로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각자의 시선에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그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2014. 10.경 이후, '문학동네'는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이 찍혀, 2014년 25종의 출판물이 세종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자체가 폐지되기도 함
-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함
 - 그밖에도 대상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이미 기록상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및 물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것임
 - 결국 본건은 『정부,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됨

- 우리 법체계는 문학과 예술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유·불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독립된 위원회 심의의 형태로 그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운영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선정조차도 자의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심의위원, 문체부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자 등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자들을 배제하여야 했던 것이 '블랙리스트' 운영의 본질이며, 이는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
- 이는 마치 대통령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되었다고 인식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개별결정에 있어서 결론을 정하여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임

2. 소위 '화이트리스트' 관련 사항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중,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 2014년 청와대 ○○수석실 등 관계인들은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여, 전경련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 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에 31개 단체에 약 35억 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 원 등 총 68억 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음

- 전경련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 등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
- 2016.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중앙지점에 전경련이 특정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6. 7.~8.경까지도 ○○○ 등 관계자들은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전경련에 요구하였고, 2016. 10.경까지 전경련은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검사는 ○○○ 등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사건 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로 인계하였음

3. 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 법령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기금 공모 심사에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산하기관의 독립성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도 권력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필요

IV.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선화예중·청담고·이화여대 재학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제15호 수사대상 사건으로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시 및 학사관리에 있어서의 특혜 등 불법·편법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밝혀진 교육농단 범죄임

1] 피고인

- 최경희(54세, 여) 구속, 前 이화여대 총장
- 김정숙(61세, 여) 구속, 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건강과학대학장)
- 남궁곤(55세) 구속, 前 이화여대 입학처장
- 이인성(53세, 여) 구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
- 유철균(51세) 구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 최순실(60세, 여) 불구속, 임대업
- 이원준(45세) 불구속, 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장
- 이경옥(59세, 여) 불구속,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교수
- 하정희(39세, 여) 불구속, 순천향대 조교수

② 공소사실 요지

1. 최경희

○ 업무방해(이화여대 입시 관련)

- 최순실, 김경숙, 남궁곤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위력으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전형 평가 등의 업무와 이화여대 교무회의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이인성,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컬러플래닝과 디자인(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이인성,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교수 이인성)', '기초의류학 I(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5.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순실을 두 번만 만났다거나, 남궁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로 증언

2. 김경숙

○ 업무방해(이화여대 입시 관련)

-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 문체부 2차관 ○○

○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0.경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위력으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전형 평가 등의 업무와 이화여대 교무회의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최순실, 이원준, 유철균 등과 공모하여 2016학년 1학기 '운동생리학(교수 이원준)', '글로벌체육봉사(교수 ○○○)', '퍼스널트레이닝(교수 ○○○)',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교수 유철균)'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줌으로써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5.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궁곤에게 정유라의 입시지원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등 허위로 증언

3. 남궁곤

○ 업무방해

-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위력으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전형 평가 등의 업무와 이화여대 교무회의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5. 및 2017. 1. 9.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등 허위로 증언

○ 위계공무집행방해

- 최경희 총장에게 2014. 9.경 작성하여 보고한 정유라에 대한 부정입학 관련 '특이사항 보고' 문건 내용을 교육부 감사를 앞둔 2016. 10.경 조작한 후 2016. 11.경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4. 이인성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최경희,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컬러플래닝과 디자인(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최경희,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교수 이인성)' 과목 관련 부정하게 학점을 주고, '기초의류학 I(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5. 유철균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김경숙,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줌으로써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6. 10.경 조교에게 정유라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시킨

후 2016. 11.경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문서와 증거를 위조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

6. 최순실

○ 업무방해(이화여대 입시 관련)

-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 문체부 2차관 ○ ○ ○ 을 통해 김경숙에게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4. 10.경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위력으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전형 평가 등의 업무와 이화여대 교무회의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김경숙, 이원준, 유철균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운동생리학(교수 이원준)', '글로벌체육봉사(교수 ○ ○ ○)', '퍼스널트레이닝(교수 ○ ○ ○)',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교수 유철균)'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최경희, 이인성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컬러플래닝과 디자인(교수 ○ ○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이경옥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코칭론(교수 이경옥)'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

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최경희, 이인성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교수 이인성)', '기초의류학 I(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여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 하정희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교수 유철균)' 과목 관련, 하정희의 제자로 하여금 정유라 대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 등을 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청담고 학사 관련)

- 2012. 12.경 및 2013. 7.경 청담고에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내지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 5부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청담고 담임교사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 2013. 5.경 및 2014. 3.경 청담고에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내지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정유라가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청담고 담임교사 등의 학생 출결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 뇌물공여(청담고 학사 관련)

- 2012. 4.경 청담고 체육부장 교사 ○○○에게 정유라에 대한 학사관리 편의제공 대가로 30만원을 뇌물로 공여

○ 공무집행방해(청담고 학사 관련)

- 2013. 4.경 규정에 따라 정유라에게 대회출전을 제한하려고 하는 청담고 체육교사 ○○○의 체육수업에 찾아가 고함을 질러 수업을 중단시

키고, 교육부장관을 통해 교사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의 수업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 사문서위조미수

- 2015. 11.~12.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용이 비어 있는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만들어 독일에서 정유라의 생활을 돕고 있는 ○○○에게 보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다가 미수에 그침

7. 이원준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최순실,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운동생리학(교수 이원준)', '글로벌체육봉사(교수 ○○○)', '퍼스널트레이닝(교수 ○○○)'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어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8. 이경옥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코칭론(교수 이경옥)' 과목 관련 정유라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어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

9. 하정희

○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 관련)

-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 2016학년 1학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교수 유철균)' 과목 관련, 제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정유라 대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위계로써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 등을 방해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0. 피의자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2017. 2. 28.)
- 2016. 12. 29. 압수수색 실시(이화여대 등 11곳)
- 2016. 12. 31. 피고인 유철균 긴급체포, 1. 3. 구속, 1. 19. 구속 기소
- 2017. 1. 3. 압수수색 실시(서울구치소 - 김종 수감장소)
- 2017. 1. 6. 참고인 ○○○ 전 문체부 2차관 조사
- 2017. 1. 11. 피고인 남궁곤 구속, 1. 29. 구속 기소
- 2017. 1. 16. 압수수색 실시(순천향대 하정희 연구실 등 2곳)
- 2017. 1. 18. 피고인 김경숙 구속, 2. 6. 구속 기소
- 2017. 1. 21. 피고인 이인성 구속, 2. 8. 구속 기소
- 2017. 1. 22. 피고인 최경희 구속영장 청구, 1. 25. 기각
- 2017. 1. 25. 피고인 최순실 체포, 조사
- 2017. 2. 15. 피고인 최경희 구속, 2. 28. 구속 기소
- 2017. 2. 23. 피의자 정유라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2023. 8. 31.)
- 2017. 2. 24. 참고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조사
- 2017. 2. 28. 피고인 최순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불구속 기소, 피고인 유철균, 남궁곤 추가 기소

④ 참고사항

1.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련 기타 의혹

- 가. 이화여대가 정유라를 위해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을 확대하여 '승마'를 추가한 것이라는 의혹

○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전형 종목 확대 경과

- 2013. 3. 29. '입학처-체육과학부' 회의에서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을 기존 11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 논의
- 2013. 5. 14. '입학처-체육과학부' 회의에서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을 승마 등을 추가하여 총 23개로 확대

○ 수사 결과

- 김경숙 학장의 주도에 의해 승마가 체육과학부 전공 교과과정으로 편입된 후 다양한 종목의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기 위해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에 있는 승마가 추가되었음
- 다만, 정유라를 위해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을 확대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나.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는 의혹

○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경과

-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됨에 따라 입학처에서 2014. 5. 9. 체육과학부에 '2015학년도 인정종목 대회 리스트' 제출 요청
- 2014. 9. 10. ~ 9. 15. 이화여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 2014. 9. 16.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2015학년도 인정종목 대회 리스트' 및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 수정 의결

※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기존 D급, 50~100점)'를 '기타 국제 대회(기존 B급, 100~200점)'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입상 실적이 대다수인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실은 확인됨

- 2014. 9. 17. 원서접수기간 도과 후 체육과학부에서 입학처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 및 '2015학년도 인정종목 대회 리스트' 송부
- 2014. 9. 23. 변경 기준에 따라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실시

- ※ 정유라는 변경된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 응시생 111명 중 4위 기록
- 2014. 9. 29. 일부 입학처 직원들이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는 기존 '2014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
- 2014. 9. 29. ~ 10. 1.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재 실시
 - ※ 기존 '2014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한 결과,
정유라는 응시생 111명 중 9위 기록

○ 수사결과

- 2014. 8. 1.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가 건강과학대학(2016. 3. 신산업융합
대학으로 재편) 학장으로 취임한 직후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도 정유라에게 유리한 것이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음
- 그러나, 정유라의 합격만을 위해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위해 이화여대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

○ 학칙 개정 경과

- 2014. 12.경 최경희 총장 주재 '예체능대학 간담회'에서 김경숙 및 ○○○
체육과학부 학부장(2013. 2. 1. ~ 2015. 1. 31.)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안'
필요 건의
- 2015. 9.경 김경숙 학장의 지시로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2015. 2. 1. ~
2017. 1.)이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을 작성하고,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
 - ※ 대회 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해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
- 2015. 12.경 학장회의에서 김경숙 학장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방안을
학칙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
- 2016. 3. 11. 기획처장이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

- 우수자 학사관리(안)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전달 및 검토 요청
- 2016. 3. 24. 교무처에서 실기우수자 학사지원을 위한 「이화여대 학칙」 개정안 작성
 - ※ 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고, 국제대회나 연수, 교육실습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 2016. 3. 28. 주례회의에서 교무처 업무보고 형식으로 실기우수자 학사지원을 위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보고, 최경희 총장이 출석 인정 사유에 '훈련'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
- 2016. 3. 29. 처장회의에서 교무처의 '실기우수자 학사지원 방안 - 우수(체육)특기자 지원을 위한 출결 및 성적 관련 지원(안)' 보고
 - ※ 출석 인정 사유로 '훈련' 적시, 부칙에 시행 일자를 '2016. 9. 1.'로 규정
- 2016. 6. 7. 교무회의에서 총장의 지시로 부칙 시행일자를 '2016. 3. 1.'로 변경 의결
- 수사 결과
 - 김경숙 학장의 요청에 의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를 위해 학칙 개정이 추진된 사실, 최경희 총장의 지시에 의해 학칙의 출석 인정 사유에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훈련'이 포함된 사실, 2016. 3. 1.로 소급 적용된 사실 등이 인정됨
 -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에 의하면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이 학칙 개정을 주도한 정황은 확인됨
- 2. 이화여대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및 이화여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특혜 의혹
 -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화여대가 정부로부터 ①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 ② 평생교육 단과대학육성 사업, ③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 사업, ④ 대학인문 역량강화(CORE) 사업, ⑤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 ⑥ 고교교육

정상화기여 대학 지원 사업, ⑦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 사업, ⑧ 수도권 대학특성화(CK) 사업, ⑨ BK21 플러스 사업, ⑩ 여성신산업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 대학에 선정되고, 관련 교수인 김경숙 학장이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K-스포츠클럽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수주, ②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 전담기관(센터장 김경숙 교수)으로 선정되고, 관련 교수인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을 수주하였다는 의혹

○ 수사결과

1) 이화여대 정부지원 사업 특혜 의혹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 관련, 사전 공고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선정되어야 함에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에 의해 상명대 분교만 선정함으로써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 마찬가지로 이화여대가 선정된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 사업 관련, 1차 선정과정에서 명문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교육문화수석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 2차 추가선정계획에 따라 이화여대가 지원하여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2차 추가선정계획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 그 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2) 관련 교수들의 연구과제 수주 특혜 의혹

- 김경숙 학장의 문화체육관광부의 K-스포츠클럽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수주 관련, ○○○ 문체부 2차관의 지시에 의해 공고절차 없이 김경숙에게 부여된 점 등 절차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 전담기관(센터장 김경숙 교수)으로 선정된 의혹 관련, 2013년에 선정된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이인성 교수가 이화여대 사업단(연구책임자 ○○○)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된 것은 그가 응모한 것일 뿐 선정 과정에 있어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의 남편인 ○○○(대학 교수)에 대한 특혜 의혹

-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장이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남편 ○○○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의혹

○ 수사결과

- 대통령이 정호성(前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하여 ○○○ 대학교수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은 인정되고, ○○○가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응모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당사자들의 부인과 대통령에 대한 미조사로 확인되지 않음

4.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가. 김경숙 학장이 케이스포츠 재단 인사 추천 관여 의혹

-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이 최순실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인사 추천을 하였다는 의혹

○ 수사결과

- 케이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 이사 ○○○(대학 교수)는 김경숙이 최순실에게 추천하여 임명된 사실, 김경숙이 최순실에게 ○○○(대학 교수), ○○○를 추천하였으나 임명되지 않은 사실, 김경숙이 최순실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본부장급 인사 추천 요청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는 최순실과 김경숙의 친분으로 인한 것이 확인됨

나. 미르 재단 이화여대에 에꼴 페랑디 분교를 설립하려고 한 의혹

○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대가로 최순실이 미르 재단에서 추진한 프랑스 파리 상공회의소 산하 요리전문 교육기관 에꼴 페랑디(Ecole Ferrandi, 이하 '에꼴 페랑디'라고 함) 분교를 이화여대에 건립하려고 하는 등 미르 재단의 사업을 이화여대와 공동 추진하였다는 의혹

○ 수사결과

- 미르 재단은 2015. 11. 30.경 에꼴 페랑디와 한국에 에꼴 페랑디 학교를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 2015. 12. ~ 2016. 3.경 3회에 걸쳐 최순실이 ○○○ 등과 함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에꼴 페랑디 사업에 대해 논의한 사실, 2016. 1.경 미르 재단이 '개도국 지원식량 개발 사업(ODA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아프리카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 식량 레시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용으로 3,150만원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최순실과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 입학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맺은 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됨

5. 청담고 및 선화예중 학사관리 의혹

가.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 중(2012. 3. ~ 2015. 2.) ① 청담고 교장 및 교사들을 기망하거나 이들의 묵인 하에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 ② 최순실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③ 최순실이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의혹

○ 수사결과

- 최순실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음
- 일부 담당 교사들이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거나 무단 조퇴를 허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비위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순실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처리 중임

나. 정유라가 선화예중 재학 중(2009. 3. ~ 2012. 2.) 출결관리 및 학교생활

기록부 허위기재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 수사결과

- 담당 교사들이 ① 무단결석을 출석 또는 질병지각으로 처리, ② 내부 결재 없이 출석인정결석 처리, ③ 현장체험학습 무단 출석인정결석 처리, ④ 과도한 대회출전 허용(연 4회 출전제한 규정 위반하여 대회출전 허용), 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순실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
-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V. 최순실의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본건은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임

① 피고인

- 최순실(60세) 불구속(별건 구속), 임대업

② 공소사실 요지

1.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2016. 1.경 안중범 경제수석과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피고인의 측근인 △△△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2.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 피고인은 2016. 2.경 코이카(KOICA) 등 공공기관 주도로 미얀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종 이권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2016. 5.경 △△△의 추천을 통해 삼성전기 임원 출신인 ○○○을 駐 미얀마 대사로, 코트라(KOTRA) 임원 출신인 □□□을 코이카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하게 한 후, 2016. 6.경 MITS Korea 운영자 ○○○으로부터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이 미얀마 현지 사업에

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피고인이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MITS Korea 주식 15.3%(총 3,060주)를 장시호 명의로 취득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7. 1. 23.~1. 30. 참고인 ○○○, □□□, △△△ 등 소환 조사
- 2017. 2. 1. 피고인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조사
- 2017. 2. 2.~2. 25. 참고인 ○○○, □□□ 등 소환 조사
- 2017. 2. 28. 피고인 최순실 불구속기소

④ 참고사항

- KEB하나은행 본부장급 인사는 KEB하나은행장의 추천 후 하나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결정되므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위 인사에 개입할 근거는 없음
- 본건 미얀마 대사 및 코이카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이미 다른 인물로 내정하여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음에도,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 인선이 바뀌었고, ○○○은 공직 경험이 전무하고 미얀마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며, □□□은 외교부 출신이 아닌 코트라 출신으로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였음
- 피고인 최순실은 ○○○, □□□의 공직 임명 무렵에 ○○○과 2회, □□□과 1회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 □□□도 피고인이 자신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은 2016. 5.~7.경 대통령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진행 상황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를 통해 최순실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음

VI.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5호 수사대상 사건으로서,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진료행위(소위 '비선진료')가 행해지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임

① 피고인

- 김영재(56세) 불구속, 성형외과 김영재의원 원장
- 박채윤(47세, 여, 위 김영재의 처) 구속, 의료기기업체 (주)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
- 안종범(57세) 불구속(별건 구속),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김상만(54세) 불구속, 전 차음의원 의사
- 정기양(57세) 불구속,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 전 대통령 자문의
- 이임순(63세, 여) 불구속,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② 공소사실 요지

1. 김영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

- 2014.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프로포폴 사용내역 및 진료기록 허위기재
-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 내 인적사항 부실기재
- 2014. 5.경부터 2016.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통령에 대해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상 미기재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4.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

○ 뇌물공여

- 박채윤과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중범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합계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제공

2. 박채윤

○ 뇌물공여

- 김영재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중범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합계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제공
-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중범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제공
-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하여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3. 안중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박채운, 김영재 부부로 부터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하여 고가의 스카프, 양주, 가방 및 현금, 무료 미용성형 서비스 등 합계 4,900만원 상당 수수

4. 김상만

○ 의료법위반

-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대통령을 진료 하고도 최순실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5. 정기양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4.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대통령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

6. 이임순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14.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창석에게 (주)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운을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16.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 2016. 12. 24. 참고인 ○○○ 전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 조사
- 2016. 12. 28. 압수수색 실시(김영재의원 등 20곳)
- 2017. 1. 2. 압수수색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곳)
- 2017. 1. 3. 압수수색 실시(서울남부구치소 - 정호성 수감장소)
- 2017. 1. 15. 참고인 ○○○ 전 대통령 주치의 조사
- 2017. 1. 21. 압수수색 실시(분당차병원 등 5곳)
- 2017. 1. 26. 압수수색 실시(안종범 주거지)
- 2017. 1. 31. 참고인 ○○○ 보건복지비서관 조사
- 2017. 2. 3. 피고인 박채윤 구속, 2. 22. 구속 기소
- 2017. 2. 3. 참고인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사
- 2017. 2. 6. 참고인 ○○○ 전 대통령 주치의 조사
- 2017. 2. 14. 압수수색 실시(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2017. 2. 14. 참고인 ○○○ 전 보건복지부장관 조사
- 2017. 2. 15. 참고인 ○○○ 전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 조사
- 2017. 2. 20. 참고인 ○○○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조사
- 2017. 2. 24. 피고인 이영선 조사
- 2017. 2. 28. 피고인 김영재, 안종범,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각 불구속
기소

4] 참고사항

1.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

- 다수 언론에서 주치의 및 자문의 등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 의료진 및 무면허 의료인이 청와대 관저까지 드나들며 대통령에 대해 불법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수사결과, 김영재가 2013. 12.경 ~ 2016. 9.경 최소 14회 가량 관저를 출입하면서 최소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대통령 주치의, 의무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 또는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홀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 처치를 하고,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음
- 그 외 주사 아줌마(○○○, '13. 3.~11.경 6, 7회), 기 치료 아줌마(P○○, '13. 3.~'16. 9.경, 월 평균 2회), 운동치료 왕십리원장(Q○○, '13. 5.~'16. 2. 수회) 등 무면허 의료인들까지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다만 언론에 알려진 다른 주사 아줌마(○○○)는 실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김영재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

- 김영재의원의 최순실에 대한 진료기록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작성되고 김영재가 속칭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출입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
- 최순실은 2013. 10.경 ~ 2016. 8.경 김영재의원에서 인적사항 '최보정, 56년 2월 2일생(최순실의 생년과 대통령의 생월일)'으로 총 138회에 이르는 진료를 받았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김영재, 박채운의 특허분쟁, 중동진출 등에 도움을 주려 하였고, 이임순을 통해 서창석 대통령 주치의에게 박채운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플레이그라운드 직원들에게 박채운 운영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존제이콥스를 소개하기도 하였음

- 대통령은 2013. 12.경 이미 최순실 또는 이병석 대통령 주치의 등으로부터 김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2016.경에는 대통령과 박채운이 이영선의 차명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음
-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안종범 등에게 지시하여 김영재의원의 중등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 최순실이 매개 역할을 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미조사, 최순실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아니함

3. 김영재의 중등 등 해외진출 지원에 청와대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수사결과, 2014. 2.경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호성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여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 ※ 정호성이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에게 김영재의원의 UAE(아랍 에미리트)에 진출 지원을 요청하여 2014. 2. 26.경 ○○○의 지인이자 중등 전문가인 △△△에게 지원을 요청
- 2014. 6.경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재의원 및 (주)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은 2014. 8.경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UAE를 방문하면서 김영재, 박채운 일행을 비공식적으로 데려가 그곳 보건청 및 국부펀드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지원
- 2015. 2. 24.경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김영재 측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개시켜 주고, (주)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사우디 의료사절단 명단에 넣어 사우디 순방에 동행할 수 있게 해주며, 2015. 3. 3.경 사우디 현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와이제이콥스메디칼만을 위한 현지 대형병원 등과의 미팅을 주선해주었음
- 결국 안종범은 김영재, 박채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각종 지원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박채운, 김영재
부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4. 김영재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등 특혜 의혹

- 수사결과, 2015. 5.경 ○○○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순천향대 교수 이임순
으로부터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박채운을 소개받고 박채운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서울대병원 사이에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되었으나, 서울대병원 내 공간 확보 등 문제로 중단됨
- ○○○은 2016. 6. 서울대병원장이 된 후, 박채운의 부탁을 받고 김영재를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6.
7.초경 중국의 덩룽 여사의 서울대병원 방문을 계기로 급히 김영재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됨
-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경우 진료과 및 교수회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장 구두 동의만 받고 김영재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규정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5. 김영재 의원에 대한 산업기술평가원의 R&D 자금지원 특혜 의혹

- 2015. 12.경 박채운 운영의 (주)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기술평가원의 R&D
지원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 15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 수사결과, 2015. 7.경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가 ○○○ 산업통상
자원비서관과의 논의를 거쳐, 산업부 및 산기평 관계자들로 하여금 와
이제이콥스메디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산기평에
서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이 애초 수요조사서 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초 기술위원회의 심사에서 지원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2015.

10.경 2차 기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봉합사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그 후 2016. 3.경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봉합사 품목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된 사실은 확인됨

- 그러한 산기평의 연구개발비 지원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안중범이 △△△를 통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사실이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

6. (주)존제이콥스(대표 ○○○, 김영재의 처남) 화장품의 청와대 납품 관련 특혜 의혹

- 김영재의 처남 ○○○이 운영하는 (주)존제이콥스사의 화장품이 2016년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지정되어 타사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세트 950개(계약금액 합계 약 7,875만원)를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결과, 2015. 말경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을 2016. 설 선물세트로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중범이 □□□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며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가 존제이콥스 외 3개 업체를 추가하여 청와대 총무과 구매팀으로 하여금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 외 2016. 6. 초순경 CJ그룹이 파리에서 개최한 'KCON(Korea Convention) 2016. 프랑스' 행사장을 찾은 대통령은 존제이콥스의 부스에 들러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그 역시 사전에 결정된 내용이었음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존제이콥스의 화장품 '제이프라스'는 인지도나 제품이미지 면에서 혜택을 보았고, (주)존제이콥스의 시내 유명 면세점 입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7. ○○○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관련 세무조사 및 인사조치 의혹

- 2014. 2.경 △△△ 경제수석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김영재 의원을 찾아간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가 김영재의원의 중등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① 2015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이 ○○○ 일가 운영의 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② 2016. 5.경 기재부 공무원인 ○○○의 남편까지 좌천성 인사를 당하였다는 의혹

- 수사결과, 대통령이 안중범에게 김영재 의원의 중등 진출을 도우라고 수차례 지시하고, 성과미진에 대해 안중범을 질책한 사실, 그러면서 ○○○에 대해 '중등 관련 브로커'라고 말하는 등 나쁘게 평가하고 ○○○가 기재부에 있는 남편도 활용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사실, 안중범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이 ○○○의 남편 □□□에 대해 '○○○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의 남편으로 타부처 발령 조치 필요'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은 확인되었음
- 다만, 위 세무조사 및 인사 조치가 ○○○의 김영재의원 중등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미조사 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음

8. △△△ 및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의혹

- 대통령 주치의의 추천도 없이 자문의가 된 △△△이 대통령의 진료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이를 통해 △△△이 속한 차음의원 등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
- 수사결과, △△△이 대통령 주치의였던 ○○○, □□□의 추천 없이 자문의로 임명된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료를 봐왔던 의사를 자문의단에 포함시킨 것인바, 그 사실만으로는 법 또는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 ※ 자문의 위촉장을 받은 2013. 8. 6.경 이전의 진료내역은 비선진료라는 주장도 있으나, 위촉장 수여가 늦어진 것일 뿐 자문의 지정은 2013. 3.경 이뤄졌음
- 그 외 차병원그룹에서 근무하는 일본 도쿄 셀 클리닉 번역세포치료 담당의, 제대혈 관련 의사, 전 알앤엘바이오 관련자 등도 조사를 하였으나, 차병원

그룹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내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하여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Ⅶ.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본건은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습 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임

특히, 본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을 확인하였는바, 두 사람은 2016. 4. 18. 부터 2016. 10. 26.까지 국내·해외에서 서로 총 573회 통화를 하였고, 특히 최순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2016. 9. 3. 독일로 출국하여 10. 30. 귀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 127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① 피고인

- 이영선(37세) 불구속, 청와대 경호실 경호관

② 공소사실 요지

1. 의료법위반 방조

- 2013. 3.경부터 2016. 9.경까지 수습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인 ○○○, □□□, △△△ 등이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6. 12. 6. ~ 2017. 1. 9. 3회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3. 위증

- 2017. 1. 12.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헌법재판소 2016헌나1) 제4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경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무렵에야 비로소 남산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처음 보았고,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제공받은 의상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여 왔으며, 정호성 비서관 등이 차명폰을 썼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7. 1. 28. ~ 2. 28. 통신영장 집행
- 2017. 2. 24. 피고인 이영선 체포영장 집행 및 조사
- 2017. 2. 26. 구속영장 청구
- 2017. 2. 27. 구속영장 기각
- 2017. 2. 28. 불구속 기소

④ 참고사항

-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권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발견되었고, 그 이권의 이면에는 반드시 최순실의 개입이 있음이 확인되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음

- 2017. 1. 27.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를 통해 '2016. 10. 26. 최순실의 요청으로 어머니 ○○○이 청와대 □□□ 행정관의 차명폰을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의 입국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 차명폰 번호를 확인하였고, 다시 □□□ 차명폰 통화 내역 분석 과정에서 대통령, 최순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실세 비서관, □□□, 피고인만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차명폰 번호를 발견하였음
- □□□ 차명폰 통화 상대방 중 가장 통화 회수가 많은 전화 (010-9420-xxxx) 통화 내역 분석 결과, ① 발신 기지국이 대부분 최순실의 실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인근인 사실, ②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이후 시점인 2016. 9. 5.경부터 유럽 통신사인 vodafone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최순실의 독일, 일본, 미얀마 출국 일자와 해당지역 로밍서비스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실, ③ 최순실이 사용한 십여 개의 다른 폰 발신 기지국 및 이용 내역과 모순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 전화번호가 최순실 차명폰 번호로 강하게 추정되었고, 통화 상대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진술을 통해 이 전화가 최순실의 차명폰 번호임을 확인하였음
- 또한, 최순실 차명폰 통화 상대방 중 가장 통화 회수가 많은 전화 (010-3180-xxxx) 통화 내역 분석 결과, ① 발신 기지국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청와대 관저'인 사실, ②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출국 당일 또는 입국(귀국) 당일 전화를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신 내역이 전혀 없어 대통령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 전화번호가 대통령 차명폰 번호로 강하게 추정되었고, 통화 상대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진술을 통해 이 전화가 대통령 차명폰 번호임을 확인하였음
- 차명폰 통화 내역 분석 결과, 2016. 4. 18.부터 2016. 10. 26.까지 국내 ·

해외에서 서로 총 573회 통화하였고, 특히 최순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2016. 9. 3. 독일로 출국하여 10. 30. 귀국하기 전까지 서로 총 127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또한, 대통령,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이 자신들끼리만 연락하는 차명폰이 모두 부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1곳에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대리점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수개월에 한 번씩 여러 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 극소수에게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第 3 章

의혹 사항 조사 결과

- I.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 II.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I.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① 조사 근거

-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사실에 대한 의혹 사항 포함

[제2조 제12호]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② 조사활동 개요

1. 조사기간 : 2016. 12. 23. ~ 2017. 2. 28.
2. 조사인력 : 수사지원단장/특별수사관 7명/독일어 통역관 1명
3. 조사 착안사항
 - 언론 등에서 도출된 최순실과 그 일가의 재산 형성 등에 대한 의혹 중 특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 선정
 - 그동안 수사기관의 본건 관련 의혹사항 조사결과 참고
 - 최순실과 그 일가가 현재 보유한 재산 파악, 그 취득 경위 추적
 -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관련자료 제공 받아 분석
 - 참고인 조사, 최순실과 그 일가 구성원 조사

③ 조사 대상

1.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현황

가. 최순실과 그 일가의 특정

- 최순실과 그의 전 배우자, 부, 모와 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등 70명(생존자 64명, 사망자 6명)

나. 조사대상 재산

- 부동산 및 동산 등 소유 및 점유 재산 일체

2. 재산관련 의혹 사항

가. 장기간에 걸친 언론 보도상의 의혹사항

나. 의혹사항 조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의혹사항

다. 최순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재산 관련 의혹사항

4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현황

1. 파악된 재산 총계 : 약 2,730억 원

가. 부동산(2017년 현재)

- 최순실과 그 일가의 토지 및 건물 총 178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 최순실의 토지 및 건물 등 36개 보유 거래 신고가 228억 원

나. 예금 등 금융 자산

- 최순실과 그 일가 중 확인된 일부 대상자의 2017년 현재 예금 등 금융 자산 약 500억 원

2. 재산의 불법 형성 및 은닉 의혹에 대한 조사 경과

- 파악된 현재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하여 취득 경위를 조사 하였으나 특검의 조사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었음

3.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추정보전명령 신청

- 최순실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 소유의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정보전명령을 신청함
- 추정보전금액 : 77억 9,735만원(향후 재판경과를 보면서 추가여부 결정)

5] 의혹사항 및 조사 경과

1. 의혹사항

-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3개 의혹사항
- 박정희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의 존재 관련 3개 의혹사항
- 학교법인 영남학원 관련 2개 의혹사항
-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관련 4개 의혹사항
- 1994년 고 최태민 사망 당시 동인의 재산 규모 및 행방 관련 4개 의혹사항
- 최순실의 모 △△△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의혹사항
- 최순실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10개 의혹사항

2. 조사 경과

- 조사기간 중 그동안의 언론보도내용 확인 의혹사항 구체화
- 대법원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25회에 걸쳐 자료 협조요청을 통하여 등기부 905건 등 다량의 재산관련 자료와 과거재산관련기록들을 제출 받아 분석
- 최순실과 그 일가 인물 19명, 참고인 60명, 총 79명을 총 94회 조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의혹사항에 대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함

6] 조사 미완료 사유 및 관련 조치 사항

-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및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하였음

- 재산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의혹사항 발생시점이 장시간 도과되어 자료가 소실되었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음
-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을 하거나, 생존 참고인들도 고령으로 진술의 확보가 어려웠고, 일부 진술자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의혹사항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그동안 유사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 금번 특검의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생성된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있게 수집하여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과 은닉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 또한 검찰로 이첩하여 향후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2017. 3. 3. 조사기간 중 작성한 9,456쪽의 조사기록과 관련자료 등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함

II.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① 의혹사실

1.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의 요지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2014. 4. 16.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 및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일 직후 대통령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성형 시술 흔적 등을 근거로 사고 당일 대통령이 비선 진료의로부터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대통령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 1. 10.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전 중 국가안보실장과 3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사회안전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국가안보실의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언론의 오보와 잘못된 보고가 겹쳐 14:50경 '승객들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대통령이 사회안전비서관, 안보수석실이 올린 보고서를 받아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었다면, 중대본 방문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라는 질문을 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손질을 받았고, 그것은 오전에 손질한 머리가 미용시술 등으로 헹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머리손질을 받느라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학생들 전원 구조' 오보는 늦어도 11:50경까지는 모두 정정되었기 때문에 '오보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혹과 반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② 의혹에 대한 수사경위

-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정보를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하여 의무실장(상근), 주치의(비상근) 등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 것인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위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특검법 제2조 제14호(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도 소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및 그들에 대한 특혜제공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것임
- 더구나 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감안할 때 위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수사는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적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특검은 비선진료의 규모,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음

③ 주요수사

1. 임의수사

-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속칭 '주사아줌마1'), ○○○(속칭 '주사아줌마2'), △△△(속칭 '기 치료 아줌마'), □□□(속칭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 △△△(이상 前 대통령 주치의), □□□, ○○○(이상 前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 △△△, □□□, 정호성, 이영선,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자), △△△(前 청와대 조리장) 등에 대한 조사

2. 강제수사

-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병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 □□□가 운영하는 미용실, □□□와 ○○○의 자택 압수수색

3. 사실조회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 2014. 4. 15.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2014. 4. 17. 및 2014. 4. 21. 대통령의 얼굴사진 비교

4. 자료협조

-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관한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
- YTN의 2014. 4. 16. 09:28~14:00 온에어 방송 동영상

④ 조사결과

1.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2014. 5.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로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2. 대통령의 2014. 4. 16. 미용시술 여부

-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왼쪽 턱밑에 2014. 4. 15. 사진에는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2014. 4. 17.과 2014. 4. 21. 사진에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 그 사이에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이로써 “대통령이 2014. 4. 16.경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음
- 이에 특검은 그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위 정기양, 김영재를 비롯하여 비선진료 의혹에 주로 등장하는 자문의 김상만을 상대로 4. 16. 당일 및 그 전후 행적을 확인하였음
 - 우선 2013. 3.경부터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바 있는 정기양은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차 2014. 4. 15. 오후부터 2박 3일간 광주에서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리고 2013. 12.경부터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면서 2014. 7.경부터는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했던 김영재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음. 다만,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 지난 12. 16.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시 확보한 2014. 4. 16.자 ○○○에 대한 차트상 김영재의 서명이 다른 날에 행해진 서명과는 상이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을 하기 위해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필적 등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판정불가(‘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판명을 받았음

- 끝으로 김상만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오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 천안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역시 세월호 7시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하는 □□□, ○○○ 자매에 대한 수사 결과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에만 한 차례 머리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손질을 받았고, 이는 미용시술 등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졌기 때문이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는 2017. 2. 18. 참고인조사에서 “평일에는 거의 매일 오전 8시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였다. 2014. 4. 16.은 그 전날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는 2014. 4. 15. 18:35경 □□□의 남편 △△△에게 “내일은 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진술에 부합함

3. 2014. 4. 16. 대통령의 머리손질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었음

- ○○○가 자신을 청와대로 태우고 들어간 경호실 직원 이영선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는 2014. 4. 16. 14:53경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15:13경 “퇴계로입니다”라고 답장하였으며, 이어 15:20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하여 이영선을 만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 진술에 의하면, □□□와 ○○○가 관저 파우더 룸에서 미용 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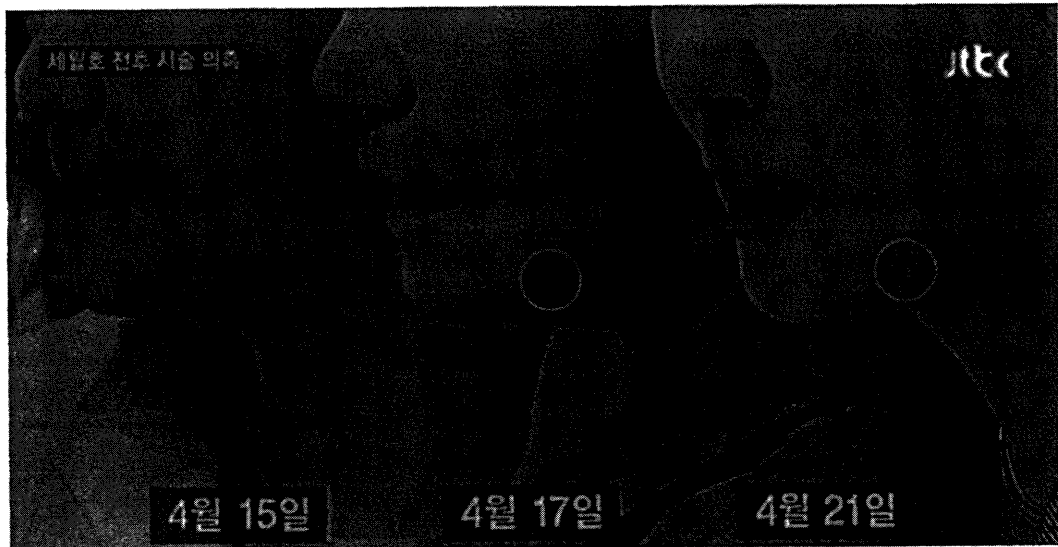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고 해서, 평소에는 머리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25분 정도 만에 끝냈다고 함

- 이런 사정에 의할 때 □□□, ○○○는 14:00경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머리 손질을 마친 것으로 보임

4. 대통령이 2014. 4. 15. 저녁부터 4. 16.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그 사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음

-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턱밑에는 2014. 4. 15. 국무회의 사진에는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2014. 4. 17.(진도체육관 방문 당시)과 2014. 4. 21.(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당시) 사진에서 나타났음

<JTBC 2017. 1. 11.자 보도기사에 게재된 2014. 4.경 대통령 얼굴사진>



- 그런데 김영재가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 등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와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

- 세월호 당일에도 이들이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용기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음

5 문제점

-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함

第 4 章

검찰이관사건

- I.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 II.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III.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 IV.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I.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1. 개요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
- 최순실이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 확인
- 정호성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 확인

2. 관련 의혹

1. 최순실과 공모하여,

- 2015. 9. 14. ~ 2016. 2. 19.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재용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따라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수수
- 2015. 10. 2. ~ 2016. 3. 3. 이재용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제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0억 2,800만 원의 뇌물수수

2. 최순실과 공모하여,

- 2016. 1.경 안종범 경제수석과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피고인의 측근인 □□□ KEB하나은행 프랑

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3. 최순실과 공모하여,

-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이 운영하거나 최순실이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4. 정호성과 공모하여,

-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공무상기밀누설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 2017. 1. 26.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 39권 임의제출 받아 압수
- 2017. 2. 1. 대통령 뇌물수수 등 범죄인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조사
- 2017. 2. 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미집행
- 2017. 2. 9. 최순실 조사
- 2017. 2. 28. 대통령 직권남용 등 범죄인지

④ 참고사항

- 의혹사항 중 1번 및 2번 의혹사항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한 의혹, 3번 및 4번 의혹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 인지한 의혹과 동일 내용(압수수색 등을 위하여 별도 인지한 것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목록>

순번	서류포목	고발인	피고발인	내용	접수일
1	진정서	△△△	박근혜 등	금호아시아나의 뇌물공여 의혹 등	'16.12.20.
2	진정서	○○○	박근혜 등	금호아시아나의 뇌물공여 의혹 등	'16.12.20.
3	진정서	○○○	박근혜 등	금호아시아나의 뇌물공여 의혹 등	'16.12.20.
4	고발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18	박근혜 외 2	현대차그룹 및 삼성그룹의 미르·스포츠재단 출연금,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등에 대한 용역 제공,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관련 및 영재센터 지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16.12.21.
5	수사의뢰	KT전국민주동지회 등	박근혜 외 1	KT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18억원 출연금 교부에 의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배임	'16.12.22.
6	고발장	□□□ 등	박근혜 등	SK의 뇌물공여 관련 의혹 등	'16.12.22.
7	고발장	봉은사 역사문화 환경 보존 대책위원회	박근혜 외 1	현대차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제공, KD코퍼레이션 용역 제공,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등에 의한 뇌물공여, 뇌물수수	'16.12.27.
8	고발장	한국노총	박근혜 외 16	삼성그룹 회장 등의 청년희망펀드 출연에 의한 뇌물공여, 뇌물수수	'16.12.29.
9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	박근혜 외	평창올림픽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	'16.12.30.
10	탄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박근혜 외 1	월남전 파병수당 일부 착복의혹 등	'17.1.2.
11	특검 수사요청 이유서	사드배치반대김천대책위	박근혜 등	'사드' 배치결과와 롯데그룹 간 유착 의혹 등	'17.1.5.
12	고발장	△△△(참여연대) 외 4	박근혜 외 11	삼성그룹 등 16개 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17.1.23.
13	고발장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재벌 구속특위 외 1	박근혜 등	삼성그룹 등 16개 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17.2.21.

Ⅱ.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① 개요

-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노태강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개시 및 진행

②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15. △△△ 前 문체부장관 조사
- 2016. 12. 26. 문체부, 김기춘·조윤선 주거지 등 18곳 압수수색
- 2017. 1. 2. □□□ 前 비서실장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9.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11.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영장 발부
- 2017. 1. 12. ○○○ 前 정무수석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 2017. 1. 13. 김기춘 자녀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18.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2017. 1. 20.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 2017. 1. 30.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구속기소
- 2017. 1. 31. 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 2017. 2. 3. 서울고등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 2017. 2. 7. 김기춘, 조운선 구속기소
김상률, 김소영 불구속기소
- 2017. 2. 28. 대통령 범죄인지

3 관련 의혹

1. 대통령은 최순실, 김상률,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3. 3. ~ 2016. 5.경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으로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2. 대통령은 최순실, 김기춘, 조운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3. 9. ~ 2016. 9.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하여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한편 2015. 5.경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원 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하여 8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3. 대통령은 김기춘,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 2014. 9.경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 □□□, △△△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4] 참고사항

- 위 1, 2, 3항 의혹사항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임.
- 우병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직권남용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대통령을 인지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로 이관하여 향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특검에서 접수한 대통령 관련 총 12건의 고발, 수사의뢰 등 사건은 검찰에 인계하여 수사토록 할 예정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목록>

순번	서류표목	고발인	피고발인	내 용	접수일
1	수사촉구서	○○○ ○○단	대통령 등	국정농단 의혹	'16.12.15.
2	수사요청서	○○○○ ○○협회	대통령 등	개성공단 폐쇄 개입 의혹	'16.12.15.
3	진정서 (수사요청서)	○○○○ ○○조합 등	대통령 외 3	○○교 및 언론사 인사 개입 등 의혹	'16.12.21.
4	고발장	김○○	대통령 외 2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재판 개입 등 의혹	16.12.23.
5	내용증명	김○○	대통령 외 2	대통령 등의 내란죄 공모 의혹	'16.12.23.
6	수사촉구서	○○○ ○○단	대통령 등	대통령의 수사방해 의혹 등	'16.12.26.
7	내용증명(2)	김○○	대통령 외 2	대통령 등의 내란죄 공모 의혹	'16.12.30.
8	수사의뢰서	국회 국조특위	대통령	최순실의 대통령 의상 비용 부담 의혹	'17.1.4.
9	무제(진정서)	박○○	대통령	故 신혜철 의료 사망사고 개입 의혹	'17.1.5.
10	수사의뢰서	최○○	대통령	탄핵반대시위 개입 의혹	'17.1.25.
11	체포영장청구서	이○○	대통령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	'17.1.25.
12	고발장	김○○	대통령 외 3	○○교 및 언론사 인사 개입 등 의혹	'17.2.21.

Ⅲ.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 개요

○ 피고인 : 우병우(50세)

-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2014.5.16.~2015.1.22.), 민정수석비서관(2015.1.23.~2016.10.30.)

○ 인지경위 및 수사착안 사항

-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①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의 설립 및 모금 등 국정농단 목인·비호 의혹, ②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소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감찰 및 인사조치 직권남용 의혹, ④ 공정위·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직권남용 의혹, ⑤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 인지하게 됨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② 관련 의혹

1. 구속영장 범죄사실

-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③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④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⑤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⑥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⑧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항 11개 범죄사실

2. 우병우에 대한 관련 의혹 사건

-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주)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 대한 관련 의혹들은,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한 한정으로 인해 그 규명에 한계가 있었는바,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주)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 개인비리의 경우 특검법 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병우 및 그 일가, (주)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목록>

순번	서류표목	고발인	피고발인	내용	접수일
1	수사촉구서	이○○	우병우	국정농단 목인 직무유기	'16.12.15.
2	진정서	조○○	우병우 등	정윤희 문건유출 故김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16.12.19.
3	수사의뢰서	민○○	우병우 외 2	몰래 변론 수임료 누락 의혹	'16.12.22.
4	진정서	장○○	우병우 외 2	○○대 총장 임명 부당개입 의혹	'16.12.23.

5	고발장	안○○	우병우 외 1	세월호 수사방해	'16.12.26.
6	고발장	○○연구소	우병우	○○청 직원 강제퇴직 압력 등	'16.12.29.
7	수사의뢰서	국회 국조특위	우병우	○○청 직원 강제퇴직 압력 등	'16.12.30.
8	조사요청서	장○○	우병우 외 1	진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16.12.30.
9	수사촉구서	이○○	우병우 등	정윤희 문건유출 故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16.12.30.
10	진정서	고○○	우병우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등	'17.1.3.
11	수사의뢰	국회 국조특위	우병우	변호사 수임료 미신고 의혹 등	'17.1.4.
12	특별수사 요청서	강○○	우병우 외 2	○○대 총장 임명 부당개입 의혹	'17.1.9.
13	수사자료 제출	조○○	우병우	○○공사 사장 인사검증 소홀	'17.1.24.
14	진정서	김○○	우병우 외 1	공공기관 운영 부당개입 의혹	'17.1.25.
15	수사의뢰	허○○	우병우	인사혁신처 채용 부당개입 의혹	'17.2.7.
16	진정서	박○○	우병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수사 축소·은폐 의혹	'17.2.14.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13.~2017. 2. 17.

- 안중범(전 정책조정수석), △△△ (前 홍보수석), 정호성(前 부속비서관), □□□(前 특별감찰관), ○○○(민정비서관), △△△, 김종덕(각 前 문체부 장관), 정관주(前 문체부 1차관), 김종(前 문체부 2차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등 76명 조사
- (주)○○ 횡령·배임 의혹사건(서울중앙지검 2016형제79491호) 등 검찰에서 송부받은 우병우 관련 수사기록 정밀 분석

○ 2017. 2. 2. 청와대 민정수석실, 창성동 별관 내 특별감찰반 등 대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 2017. 2. 3.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 2017. 2. 18. 우병우 조사
- 2017. 2. 19. 사전 구속영장 청구
- 2017. 2. 21. 구속영장 기각
- 2017. 3. 3. 사건 중앙지검 인계

4] 조치

- 구속영장의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
-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총 16건을 검찰에 이첩

IV.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① 개요

-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시절 저지른 학사비리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시절 저지른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 사건
- 특검2016년 형제1호(서울중앙지검 2017년 형제15651)로 범죄인지하여 2016. 12. 21. 기소중지 처분 및 체포영장에 기해 지명수배

② 관련 의혹

1.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 정유라가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학하였다는 의혹
3. 정유라가 이화여대 재학시절 출결, 학점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③ 주요 수사 경과

- 2016. 12. 20. 피의자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2017. 2. 28.)
- 2016. 12. 29. 압수수색 실시(이화여대 등 11곳)
- 2017. 1.~2. 공범 최순실(불구속), 최경희(구속), 김경숙(구속), 남궁곤(구속), 유철균(구속), 이인성(구속), 이원준(불구속), 이경옥(불구속), 하정희(불구속) 기소
- 2017. 2. 23. 피의자 정유라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2023. 8. 31.)

4] 참고사항

1. 공범 처분

○ 청담고 학사비리 의혹 관련

- 공범 최순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 공범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각 기소

○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 관련

- 공범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 이인성, 유철균,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각 기소

2.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및 인터폴 적색수배

○ 2016. 12. 27. 법무부에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요청하여 법무부에서 독일 법무부에 정유라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 / 경찰청에 정유라에 대한 국외도피사범 인터폴 공조수사(적색수배) 요청

○ 2017. 1. 2. 법무부에 2017. 1. 1. 덴마크에서 소재가 발견된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하여 법무부에서 덴마크 법무부에 정유라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청구

○ 2017. 1. 4. 법무부에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요청하여 법무부에서 덴마크 법무부에 정유라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

○ 2017. 2. 13. 덴마크 법무부의 추가사실확인 요구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확인서 발송하여 덴마크 법무부에 회신

○ 2017. 2. 24.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

第 5 章

제 도 개 선 사 항

1 수사기간 문제

- 이번 특검은 법 제9조에 따라 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수사기간이 부여되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본건은 현직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개입, 입시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바,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임

구 분	준비기간	수사기간	연장	연장 결정	수사대상
'16. 민간인 국정농단 특검	20일	70일	1회 30일	대통령 승인	15개 항목
'12. 디도스 특검	20일	60일	1회 30일	"	4개 항목
'12. 내곡동사저 특검	10일	30일	1회 15일	"	2개 항목
'10. 스폰서검사 특검	20일	35일	1회 20일	"	4개 항목
'07. 삼성비자금 특검	20일	60일	1회 30일, 추가 15일	대통령에게 보고	2개 항목

-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대상 및 범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간을 정하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본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 관련 수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며,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있음
- 따라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간의 수사기간을 정해 주고 필요한 만큼 수사를 마친 후 공소유지에 들어가게 하는 등 수사기간의 사용을 특별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② 공소유지 지원 관련

□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등 공무원 파견 문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등 이번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성격상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관련 쟁점이 많아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은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무부는 특검 공소유지 기간 중 검사 파견을 실시하면서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파견 규정을 근거로 하였음
- 따라서, 향후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 중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간 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금지 해제 문제

- 현행법은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소유지 기간 중에도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공소유지는 수사기간에 비해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발동 시 생업상의 문제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소유지 기간 중 겸직을 허용한 과거 특검법의 입법례에 따라 향후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법률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③ 군사보호시설, 공무상 비밀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관련

-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내 시설 등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²⁾을 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압수·수색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한 수권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위 불승낙이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각하 결정을 하였음
-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수사

2) 영장집행불승인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관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무장 요원의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입법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불승인에 관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